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윤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43

발의년월일 : 2020. 04. 09

발 의 의 원 : 윤영애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이만규 의원
이영애 의원
임태상 의원
배지숙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정천락 의원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을 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용어, 명칭, 기능 등 정의함(안 제1조～4조)

나. 자가통신망의 이용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자가통신망 관련 중복투자 방지와 경비부담 및 관련 재산의 소유를 명시함(안제7조～제10조)

라.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가통신망의 주요운영 안건을 심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6조)

마.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광통신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21조)

바. 정보보호와 및 비상사태시의 대응책 마련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및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자가통신망'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스마트광통신센터'란, 자가통신망의 주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가통신망의 운영 및 관제를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3. '자가통신설비'란, 자가통신망을 구성하는 광케이블, 통신주, 맨홀 등 선로설비, 전송설비, 네트워크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이용기관'이란,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의 소속기관, 자치구·군(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관련 행정기관을 말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시 자가통신망의 명칭은 **"대구스마트넷"**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활용범위) 자가통신망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교통, 환경, 안전, 방재, 보건, 교육, 관광 등 시정업무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이용기관과의 정보통신망 연계에 관한 사항
3. 유·무선 정보통신,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 일반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자가통신망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고도화) 시장은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맞추어 자가통신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투자방지) 시 및 이용기관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자가통신망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의 자가통신망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가공공중선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8조(사전 승인) 이용기관은 자가통신망을 이설·철거·변경 또는 연계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동일한 건물 내의 경우는 소관부서의 승인 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증설 및 변경시의 경비부담) 이용기관이 필요에 따라 접속기관을 확대하거나 통신의 용량을 증설 또는 설비를 변경할 경우, 그 경비는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10조(설비 및 시설의 소유) ① 자가통신망의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제9조에 따라 증설 또는 변경된 설비는 시의 재산으로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기관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설비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이용기관에 양여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자가통신망 이용기관의 자가통신설비 운용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교육) 시장은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공무원의 신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가통신망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이용기관과의 정보통신망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가통신망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정보통신 관련 비영리법인의 상임 임원으로서 당해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2.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비밀엄수)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스마트광통신센터

제17조(설치・운영)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광통신센터(이하 "통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위치) 통신센터는 시 청사 내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청사 또는 임대청사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통신센터는 자가통신망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감시・제어하고, 그 구성의 변경, 장애의 복구, 성능의 유지, 보안관리, 예방점검, 기술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자가통신망 홍보관) 시장은 자가통신망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신센터의 일부 공간을 자가통신망 홍보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제한) ① 통신센터는 지정된 근무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견학, 언론보도 등 일반인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센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보안 및 비상통신

제22조(보안관리)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통신의 확보) 시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자가통신망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그 외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자가통신망 이용을 일부 제한하고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비상통신 확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 계 법 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管路)·공동구(共同溝)·전주(電柱)·케이블이나 국사(局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기관의 사용계획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관로·공동구·전주 등의 설비등을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시설관리기관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 「도로법」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